

□ 중앙공원내 산림욕장 부지매입

- 단 위 :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20-10
- 면 적 : 77,548㎡
- 부지매입 : 13,950㎡(4,220평)
- 예 산 액 : 620,000천원
- 취득사유 : 중앙공원내 산림욕장 시설물(체육시설, 약수터, 화장실등)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환용하고자 함.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경과

1. 심사일정

-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 나. 회부일자 : '94. 2. 15.
- 다. 상정일자 : '94. 2. 24.
- 라. 의결일자 : '94. 2. 24.

2. 제안설명요지

- 가. 설명자 : 건설국장
- 나. 내 용

- '93. 8. 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도로법시행령 중 일부개정으로인한 동 조례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등급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을 정액제로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점용료가 상당히 상승하므로 동 시행령에 점용료 조정산식에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평균 20.9%의 상승요인이 발생함.

3. 질의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점용료를 “인근 토지등급가격”에서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상당히 상승효과가 발생할 텐데 시민들의 부담과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아닌가 • 한두 평 점용허가를 받아 이보다 많은 곳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업소가 많은데 이의 대책은	•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어떤 곳은 300%정도 상승하는데 이는 도로법 시행령의 조정산식에 의거 산출하면 평균 20.9%가 상승되며 일부 점용허가대상자만 해당되므로 물가상승에는 영향없을 것으로 사료됨 • 철저한 조사와 단속으로 그와 같은 건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광고물 중 현수막의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 도로를 점용한 부분을 산정하며 보통 50원에서 100원정도 부과됨
- 상위법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점용료징수는 불가피함

4. 찬성토론 : 과표와 공시지가의 일원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점용료산식의 조례개정은 불가피함

5. 반대토론 : 없 음

6. 소수의견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
의 결 년월일	94. 2. 26 (제26회)

제출년월일 : 1994. 2.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1993. 8. 14 대통령령 제13958호 도로법 시행령 중 부분 개정으로 인하여 부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근거가 되는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
- 점용료 기간산정 15일 이하일 때 1/2월, 15일 초과일 때 1월, → 미산정
 - 점용료 면적산정 0.5㎡ 이상을 1㎡로 할 때 → 미산정
 -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등급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등급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제”로 부과하고
 - 이외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인접, 토지등급가격”에서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의 설치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진 주		1개	1년	600
	전주와 유사한 것				900
	공 중 전 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관, 통신시설관	직경 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30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6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90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200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500
		직경 1 미터초과			3,000
		기타의 관			직경 0.1미터이하
	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450		
	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900		
	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초과		1,350		
	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800		
	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2,250		
	직경 1 미터초과		4,5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일시 설치한것 (1월미만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기 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5,0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00
	아 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30,000
기 타		15,000			

집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집 용 료
			집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풍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풍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00
	기 타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집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집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원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집용면적, 집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집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6.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집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집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집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집용료는 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원		개		정		(금액의 단위 : 원)	
[별표]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별표1]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구 분	산정방법	점 용 료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1.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산한 공적물 설치에 관한 점용	1.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점용의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주인 때에는 800원, 월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여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전주, 공중전선,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주	1개	6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900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전탑, 전기관, 통신시설관	길이 1미터	24,100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직경 0.1미터 이하	1년	150		
			직경 0.1미터 초과		300		
			직경 0.2미터 이하		600		
			직경 0.4미터 이하		900		
			직경 0.6미터 이하		1,200		
			직경 0.8미터 이하		1,500		
			직경 1.0미터 이하		3,000		
			직경 1.1미터 초과		200		
			직경 0.1미터 이하		450		
			직경 0.2미터 이하		900		
			직경 0.4미터 이하		1,350		
			직경 0.6미터 이하		1,800		
			직경 0.8미터 이하		2,250		
			직경 1.0미터 이하		4,500		
			직경 1.1미터 초과		100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점용)	1일	15,000		
			기 타	1년	12,500		
			사설 안 내 표 지	1년	50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1일	100		
			기타의 용도	1년	30,000		
			도로횡단	1년	15,000		
			기 타	1년	15,0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2. 점용면적에 인근토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타의 관	직경 0.1미터 이하	1년	100		
3. 광고탑, 광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3.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광고막루 등 점용면적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인근토지가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	직경 0.1미터 이하	1년	100		
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유계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4.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들의 전출입시 설을 위한 공동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승강대, 화물적치장, 유계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직경 0.1미터 이하	1년	100		

현		개		정		(안)	
[별표]		[별표1]		점용토의 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구 분	산정방법	점 용 토	물 의	중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5. 철도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5.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처리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4층 이상인 건축물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6. 지하도, 지하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6.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존 주택에 부설된 지하실로서 당해지하실의 설치 후 도로의 지하로 된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진 입 로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타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7. 전각호의 계기가 된 이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7. 점용면적에 인근토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8을, 지하도 등에 칠해진 물건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7. 노점, 자동차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공 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관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타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별표1]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가. 제3호의 점용에는 일시적인 공고막류 아취식공작물 또는 노상임간판류 등을 위한 도로의 점용이 포함된다. 나. 제7호의 점용에는 노점, 지하상점, 각종 공작물, 건축물, 교육 및 식물채배를 위한 도로점용이 포함된다.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 1원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6.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